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121 호
2017년6월27일(화)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161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1290호 여수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
- 여수시 공고 제2017-1291호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0
- 여수시 공고 제2017-1297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46

회 관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7. 6.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여수시 적량동 475-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도로(대로3-26호선)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37,851m²

나. 규 모 : L= 1,949m, B= 1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GS칼텍스(주) 허진수, 박병열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년월일 : 2017. 6.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년월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6	25	주간선 도로	7,539	대1-10 삼일동 362-2도	중1-17 월내동 250-12철	일반 도로			

나.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게재생략

9.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여수시 도시계획과)

10. 인가조건 : 게재 생략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적량동	475-5	잡	1,731	827	서울 중구 장교동 1	한화케미칼(주)	
2	적량동	478	도	15,508	3,280	국	국토교통부	
3	적량동	443-4	잡	913	18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4	적량동	443-2	잡	108	108	서울 중구 장교동 1	한화케미칼(주)	
5	적량동	443-3	도	1,569	1,289	국	국토교통부	
6	적량동	1304	천	10,967	124	국	국토교통부	
7	적량동	427-1	잡	1,429	21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8	적량동	428-8	잡	131	131	서울 중구 장교동 1	한화케미칼(주)	
9	적량동	428-7	도	2,001	1,296	국	국토교통부	
10	적량동	1301	전	435	31	국	기획재정부	
11	적량동	433-1	잡	430	142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12	적량동	433-2	잡	84	74	서울 중구 장교동 1	한화케미칼(주)	
13	적량동	433-3	도	1,153	1,008	국	국토교통부	
14	적량동	1304-4	천	6,687	157	국	국토교통부	
15	적량동	383-1	잡	421	306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16	적량동	383-3	잡	195	195	서울 중구 장교동 1	한화케미칼(주)	
17	적량동	383-4	도	1,990	1872	국	국토교통부	
18	적량동	1297	도	1,529	21	국	국토교통부	
19	적량동	1285-22	구	757	26	국	국토교통부	
20	적량동	143-2	잡	558	542	서울 중구 장교동 1	한화케미칼(주)	
21	적량동	143-3	도	8,680	6,798	국	국토교통부	
22	적량동	143-1	잡	3,749	702	국	건설부	
23	적량동	1298	도	43	13	국	국토교통부	
24	적량동	383-2	전	206	11	여수시 소호동 357-13	김명권	
25	적량동	434-4	전	448	10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218(화치동)	금호피앤비화학(주)	
26	적량동	224	유	9,809	4	공	여수시	
27	적량동	130-4	천	921	107	국	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28	적량동	144-19	잡	807	373	국	건설부	
29	적량동	144-22	잡	150	150	서울 중구 장교동 1	한화케미칼(주)	
30	적량동	144-23	도	4,497	1,341	국	국토교통부	
31	월내동	475-3	잡	1,824	1,139	국	건설부	
32	월내동	475-2	잡	403	403	서울 중구 장교동 1	한화케미칼(주)	
33	월내동	477	도	9,347	3,996	국	국토교통부	
34	월내동	산13-24	임	487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한국바스프(주)	
35	월내동	1344-26	전	109	3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36	월내동	1343-3	전	63	12	전남 여수시 화치동 373-15	한국바스프(주)	
37	적량동	산176-1	임	6,302	18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 시그니처타워스 서울)	금호석유화학(주) 금호피앤비화학(주)	
38	적량동	144-12	전	91	36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 시그니처타워스 서울)	금호석유화학(주) 금호피앤비화학(주)	
39	적량동	148	답	987	9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 시그니처타워스 서울)	금호석유화학(주) 금호피앤비화학(주)	
40	월내동	476	전	699	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41	월내동	1381-2	천	1,032	337	국	국토교통부	
42	월내동	479-2	잡	15	15	여수시 낙포동 159-3	재원산업(주) 한화케미칼(주)	
43	월내동	479-1	잡	10	10	국	국토교통부	
44	월내동	480	잡	1,337	1,138	국	건설부	
45	월내동	480-4	잡	500	455	여수시 낙포동 159-3	재원산업(주) 한화케미칼(주)	
46	월내동	480-3	도	6,439	3,848	국	국토교통부	
47	월내동	543-14	임	163	31	전남 여수시 화치동 373-15	한국바스프(주)	
48	월내동	543-4	전	187	18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49	월내동	544-1	전	328	94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50	월내동	545	전	392	14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51	월내동	551-2	전	27	27	국	건설부	
52	월내동	551-1	전	496	1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53	월내동	552	묘	186	3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54	월내동	552-5	도	31	4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55	월내동	553	전	208	4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56	월내동	1372-39	도	299	188	국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57	월내동	571-1	잡	625	432	국	건설부	
58	월내동	571-2	잡	35	35	여수시 낙포동 159-03	재원산업(주) 한화케미칼(주)	
59	월내동	570-4	잡	404	382	국	건설부	
60	월내동	570-6	잡	85	85	여수시 낙포동 159-03	재원산업(주) 한화케미칼(주)	
61	월내동	570-7	도	942	469	국	국토교통부	
62	월내동	570-2	임	487	4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63	월내동	1375-4	천	594	183	국	국토교통부	
64	월내동	420-3	잡	136	115	여수시 낙포동 159-03	재원산업(주) 한화케미칼(주)	
65	월내동	420	잡	809	280	국	건설부	
66	월내동	420-4	도	1,767	1,307	국	국토교통부	
67	월내동	1375-3	천	452	104	국	국토교통부	
68	월내동	422-1	잡	719	8	국	건설부	
69	월내동	422-3	잡	97	25	여수시 낙포동 159-13	재원산업(주) 한화케미칼(주)	
70	월내동	422-4	도	1,028	216	국	국토교통부	
71	월내동	571-3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72	월내동	480-1	전	738	2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칼텍스(주)	
73	월내동	478-3	도	680	587	국	국토교통부	
계				119,565	37,851			

공 고

「여수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27.

여 수 시 장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률에 근거한 규제사항의 통합적 정비
- 「경관법」 및 「건축법」 개정과 ‘여수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를 위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아름다운 경관 형성 유도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인한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도 제정으로 관련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규모 변경(안 제21조)

-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도로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신설교량

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구체화(안 제22조)

-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의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m 이상 건축물
- 옥탑 등 구조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1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건축물(현행조례와 동일)
- 경관심의 제외대상 건축물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공공건축물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다. 상위법과 중복 조문 삭제

- 현행조례 제2조(정의) : 경관법에 기본명시
- 현행조례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 경관법 제3조에 명시
- 현행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명시
- 현행조례 제13조(협의체의 기능) : 영 제9조제2항에 명시
- 현행조례 제14조제2항제2호(현행조례 제14조 → 안 제10조) : 경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 현행조례 제2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경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중복명시로 조문 삭제
- 현행조례 제30조(임기) : 「경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명시
- 현행조례 제33조제1항제1호(공동위원회의 구성) : 「경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명시

라. 상위법 및 관련법령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

- 현행조례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삭제 :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의 의무부과 조항

- 시장에게 포괄적 위임 규정 삭제
 - 현행조례 제7조제11호(경관계획의 내용)
 - 현행조례 제16조제2호(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 현행조례 제17조제4호(경관협정의 내용)
 - 현행조례 제19조제1항제2호(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명시사항)
 - 현행조례 제28조제3호(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현행조례 제32조제6호(위원의 해촉)
- 현행조례 제22조제1항제2호(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삭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 현행조례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제 : 소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대체하기 위한 상위법령 근거가 없음

마. 관련법률에 따른 조항의 이동 및 삭제(현행 시행규칙 제5조→조례안 제11조)

- 보조금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이동
- 현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삭제 : 불이익한 행정처분 시 해당 규정 없이도 사전통지를 해야 함으로 삭제

바. 공공디자인 관련 조항 삭제(현행조례 제35조~제40조, 제42조)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안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이동

3. 입법예고기간 : 2016. 6. 27. ~ 2017. 7. 16.(20일간)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받는 사람 :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

- 전 화 : 061)659-4564, 팩스 : 061)659-5833

- 이 메 일 : seminalee@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3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관현황분석도
2. 경관기본구상도
3.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4.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③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읍·면·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과 계획에 관한 사항
10. 여수시 10경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경관사업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산업 및 항만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제7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비용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이해관계인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 경관 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경관사업 시행자

7.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체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2.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그 밖에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및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공공 건축물
2. 항만시설과 교량
3.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 조형물
4. 그 밖에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그 밖에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4장 경관협정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방안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표자 및 위원의 선임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 체결 및 인가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의 비용 보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용 산출근거
4. 사업비용 조달 계획
5.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용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지원대상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②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경관심의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도로
2.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3.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신설교량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
2.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옥탑 등 구조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1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항에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 제23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유보, 반려로 의결한다.
- ②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야간경관조명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에 관한 용역·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개의회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시의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제28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경관 시범지역 지정) 시장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경관 상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따른 경관 상을 수여 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거리(가로 포함) 부문
2. 마을 부문(한옥단지 포함)
3. 토목 구조물(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 포함)
4. 공원 녹지 부문
5. 역사문화 부문
6. 야간경관 부문
7. 산림경관 및 도시 숲 조성 부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제1항에 따른 경관 상의 수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가 신청되어 종결되지 아니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공건축물 심의 대상(제21조 관련)

유 형	구 분	심의대상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시청,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안내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문화복지시설	가. 체육관 나. 경기장 다. 공연장 라. 시민회관 마. 의료.복지시설 바. 복지회관 사. 광장.공원.놀이터	
전시.홍보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홍보관 라. 전시관 마. 기념관 등	
교통시설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별장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공 고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27.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공공디자인법)」이 제정·시행('16.8.4) 됨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추가·보완 제정
- 우리 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공디자인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발전을 위한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

나.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구성(안 제7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경관 위원회위원이 되도록 함

다.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안 제8조)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시가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대상요소의 심의
 - 공공공간 : 대상요소의 사업비 1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 대상요소의 사업비 20억원 이상
 - 공공매체 또는 공공이미지 : 대상요소의 사업비 1억원 이상
-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 11조)

- 공공디자인 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마.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범·공모사업 지원(안 12조)

-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공모사업 시행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가능

바.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13조)

- 공공디자인대상 사업 추진을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3. 입법예고기간 : 2016. 6. 27. ~ 2017. 7. 16.(20일간)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받는 사람 :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
- 전 화 : 061)659-4564, 팩스 : 061)659-5833
- 이 메 일 : seminalee@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함과 아울러 여수시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별표1에 따른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이하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3. 역사·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
4. 환경성·경제성·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
5. 쾌적하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6.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이하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한다) 적용

7.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디자인(이하 “범죄예방디자인”이라 한다) 적용

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준수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시설물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조성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실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이 공공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안의 방법을 미리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가. 별표1에 따른 영역 중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나. 별표1에 따른 영역 중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 다. 별표1에 따른 영역 중 공공매체 또는 공공이미지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의 구역 안에 소재한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

사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타 위원회(시 외의 지방 또는 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색상, 형태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체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를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5. 기존에 설치된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와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6.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

7.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8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공적공간은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배치하여 사전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

6.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 본청의 건설교통국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사업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여수시 공공디자인 대상 영역 분류

공공디자인 대상 영역 분류

영역	중분류	세분류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
① 공공공간	다중이용	여가휴게	공원, 광장, 공개공지, 수변산책로·탐방로
		관광휴양	해수욕장, 관광지 등
		체육공간	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가로공간	도로·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항만	선착장, 방파제, 방조제 등
		환경기반	발전·변전·송전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환경시설·묘지 관련시설 등
	도시·마을	문화특화	특화마을(전원마을, 행복마을, 문화마을, 생태마을, 은퇴자 타운 등) 특화거리(문화예술의 거리, 디자인 거리, 옥외광고 특화거리 등) 관광타운(쇼핑타운, 숙박타운, 음식타운, 국제행사 타운)
		역사특화	전통한옥마을, 역사의 거리, 역사문화지 등
		산업특화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② 공공건축	공공청사	행정	행정시설(국가 및 지자체 청사, 공관, 주민센터, 우체국), 안전시설(소방서 등)
		보건복지	국공립 의료시설(병원, 의료원, 보건소), 복지시설(아동, 노인, 사회복지, 근로복지 등)
	다중이용건축	문화집회	공연관람장(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시(군)민회관, 마을회관, 어린이회관 등
		교육수련	교육시설(국공립학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교육(훈련)원, 유아원,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자동차	터미널(여객선, 버스, 철도, 공항), 주차타워 등
	기타공공건축	환경기반	환경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관개배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실험 관측시설 등)
		휴게편의	종합관광안내소, 공공화장실 등
③ 공공시설물	도로구조물	도로개설	교량(철교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도, 터널 등
		도로부속	보도육교, 석축 및 옹벽, 방음벽 등
	가로시설물	교통보행	펜스, 볼라드, 가드레일,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보관대, 신호등, 가로등·보행등 등
		가로녹지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편의휴게	파고라, 벤치, 쉼터,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세면대 등
공급관리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방재시설(소화전, 제설함), 범죄예방장치, 시계, 온습도계 등		
④ 공공매체	정보매체	교통안내	교통표지판(이정표, 방향유도표지, 주의 규제표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류장 표지(버스, 택시) 등
		정보안내	정보안내도(관광, 문화재, 시설, 버스노선), 보행자 방향안내표지, 표석(문화재, 마을) 등
	환경연출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야간조명, 미술장식품, 식물벽, 식물경사지 등	
공공매체광고물	현수막게시대, 공공목적 광고물, 영상정보시각매체, (환경정보, 교통정보, 옥외전광판) 등		
⑤ 공공이미지	상징물	조형상징	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게이트, 상징물, 역사 사적물 등
		이미지	공공기관 상징시스템(CI, BI,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등
	공공용품	행정	각종 집기와 도구, 책보, 가구, 표찰, 무인민원처리기 등
		개인	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유통매체
⑥ 공공디자인정책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조례, 디자인 관련 조직 및 단체, 디자인 시책 및 사업, 디자인 육성 및 교육, 디자인 관련 법령 및 규정, 디자인 행정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3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 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환경조형물
 -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 다. 벽화
 - 라. 슈퍼그래픽
 -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 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

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 【별지서식】

2. 사업추진 개요 및 향후 계획(A4, 1~2매)

- 사업 추진 목적
- 사업(용역) 개요
- 사업(용역)세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심의(자문)서

- 형 식 : A3규격 횡철
- 내 용
 - 1) 사업개요
 -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할 경우
 - 3) 재 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 " × 7 ") 3 ~ 4매
 - 디자인 콘셉트(계획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물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 5) 향후추진 일정 등
 -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3-1. 심의도서 작성 예시

○ 표 지

제 차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HY헤드라인 12)

안건명(HY견고딕 35)

- 사업위치(HY 견명조 20) -

심의일자(HY견고딕 20)

기관, 소관부서명(HY견고딕 20)

○ 내 용: 1) ~ 6)

1. 사업개요(HY견고딕 30)

(자료내용 : 상기 심의도서 내용 등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1 - (쪽번호, 휴먼명조 12)

4. 제안 설명용 USB & CD

- 상기 심의(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 pdf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가급적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27.

여 수 시 장

□ 양수인가 내용

- 태양광발전사업(여수 제112호)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업 체 명	복산1호 태양광발전소	복산1호 태양광발전소
발전소명	복산1호 태양광발전소	복산1호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최 수 *	김 정 *
소 재 지	여수시 시전4길 8-**(신기동)	여수시 망마로 82-10, 28동5**호(신기동,대림사택)
설치장소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95-3, 595-4번지	
설비용량	99kW	
허가일자	2017년 6월 26일	
양수예정일	2017년 6월(양도.양수 계약 : '17. 6.)	

□ 양수인가 내용

○ 태양광발전사업(여수 제115호)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업 체 명	복산4호 태양광발전소	복산4호 태양광발전소
발전소명	복산4호 태양광발전소	복산4호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최 성 *	황 순 *
소 재 지	여수시 시전4길 8-**(신기동)	여수시 선원2길 30-*(선원동)
설치장소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95-3, 595-4	
설비용량	99kW	
허가일자	2017년 6월 26일	
양수예정일	2017년 6월(양도.양수 계약 : '17. 6.)	

□ 양수인가 내용

○ 태양광발전사업(여수 제116호)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업 체 명	복산5호 태양광발전소	복산5호 태양광발전소
발전소명	복산5호 태양광발전소	복산5호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최 성 *	정 정 *
소 재 지	여수시 시전4길 8-**(신기동)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49,104동 ****호(금오동,주공그린빌아파트)
설치장소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95-3, 595-4	
설비용량	99kW	
허가일자	2017년 6월 26일	
양수예정일	2017년 6월(양도.양수 계약 : '17. 6.)	

□ 양수인가 내용

○ 태양광발전사업(여수 제3636호)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업 체 명	(주)지인 태양광발전소	(주)해드림 태양광발전소
발전소명	(주)지인 태양광발전소	(주)해드림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최 현 *	윤 점 *
소 재 지	여수시 신기남3길 *(신기동)	여수시 신기남4길 8-**(신기동)
설치장소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1311-2	
설비용량	995.1kW	
허가일자	2017년 6월 26일	
양수예정일	2017년 6월(양도.양수 계약 : '17. 6.)	